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로 함 (안 제2조)
-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안 제3조)
- 계획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과 소요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5조·제6조)
-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1조·제12조)
-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3. 의안전문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4.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